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7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9.
3.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수입·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② (생략)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2.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사업¹⁾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법 제23조의4²⁾에 따라 사업선정신청을 하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목별 목표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4. 채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표 1]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지원사항

법률 ³⁾	시행령 ⁴⁾
- 기술개발 -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 재고확대 -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과 같이 현행 지원사항에 추가하여 “국내 소재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사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가격경쟁력 외에 생산효율화, 생산비용 절감

3) 동법 제23조의4제3항

4)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제4항

등이 필요하므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경제성 확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처럼 “가격경쟁력 확보”를 “경제성 확보”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상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컨설팅, 국내성능검증·인증·실증, 재고확대, 규제개선과 국제협력,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원이 허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원유형은 기술개발, 정보제공·컨설팅, 국제협력 등 공급망 안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상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정책수행 결과로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입법례 중 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명시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